

수원지방법원 2016. 7. 15 선고 2015가단2695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7. 1.

판결 선고 2016. 7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20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20, 19, 18, 17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47㎡ 및 같은 도면 표시 7, 8, 9, 22, 21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2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 205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임재남

별지